

VII. 시정권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치며,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VIII. 언론중재법 제정에 대한 평가

1.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관련 법률의 단일화

현행 민법과 정간물법, 방송법 등에 분산되어 왔던 언론피해 관련 규정이 언론중재법으로 통합됨으로써 구제 제도에 대한 피해자들의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한 이용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조정과 중재 절차의 분리

현행 중재절차는 조정에 가까워 중재와 혼동이 있었으나 언론중재법에서는 본래의 의미인 중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정과 중재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절차에 대한 선택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됐으며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손해배상청구도 조정·중재대상화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

정간물법상 중재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만 중재를 하도록 했으나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의 조정,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분쟁을 종합적으로 조정, 중재함으로써 언론피해를 현실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물론 언론사 역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법적 소송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분쟁을 조속하고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인터넷신문에 의한 피해구제 제도 신설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신문과 달리 이에 따른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비했던 점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신속성과 함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신문은 종래 법률 규정의 미비로 인해 정간물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피해구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여론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오프라인의 역할이 점차 감소되고 온라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본다.

5. 중재신청 방법의 다양성

피해구제를 구술이나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도 가능케 하였다.

6.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종래의 정간물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반론보도청구에 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전치주의’를 채택했었다. 반면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신청인이 임의적으로 중재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으며, 곧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법은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했다.

7. 시정권고의 확대

현행 시정권고는 언론중재위 자체 심의를 통해 실정법상 문제가 되는 보도에 한해 이뤄져왔으나 언론중재법에서는 피해자는 물론이며 제3자도 특정보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8. 언론중재법의 문제점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의한 피해를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놓고 있다.

가)언론피해구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지나치며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만을 강

조합으로써 언론의 본질성을 외면할 우려가 있다.

나)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할 윤리적 판단사항까지 법으로 강요하고 있다.

다)일간신문이나 방송의 책임정도와는 다른, 인터넷 언론들까지도 다른 매체와 동등하게 다룸으로써 인터넷 언론은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도 앞으로는 정식 언론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기존의 언론매체와 대등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점도 있다.

라)손해배상문제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시정권고의 기능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나 분쟁 해결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은데다가 시정권고 기능이 불명확하여 사후검열의 우려가 있다.

IX. 사례

1. <과학기술부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설립을 줄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4. 6. 3.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영남권의 연구개발 허브 기능을 담당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추진 과정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경과기원은 지난해 11월 범영남권 연구개발 허브 역할을 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학기술부는 관련자가 불참한 가운데 정관을 통과시키는 등 줄속으로 절차를